

검 토 보 고 서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건 명 |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 |
| 의안번호 | 제31호 | 제 출 자 | 논 산 시 장 |
| 제 출 일 | 2024. 03. 13. | 회 부 일 | 2024. 03. 13. |

1. 제안이유

- 논산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민대상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호선하는 등의 현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당연직인 위원장을 선출직으로 변경 (안 제4조제2항)
- 수상자 결정에 필요한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 (안 제6조)
- 시상 횟수 변경 (안 제8조)

3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민대상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과 현재 격년으로 실시 하는 등의 현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